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 1호

| 투자설명서 |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명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회사명	하이자산운용(주)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은행 (☎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번지 ● 대우증권 (☎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 리딩투증권 (☎ 1544-7004, www.leadingkorea.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 하나은행 (☎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 하이투자증권 (☎ 1588-7171, www.hi-ib.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번지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 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 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0월 24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i-am.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1쪽)

1. 명 칭 :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77249)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개방형, 공모형, 국내투자
4. 자산운용회사 : 하이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 본문 2~3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뉴 트렌드 위주의 종목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 비교지수 : KOSPI 100%																		
2. 주요투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시장주도 종목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트렌드별 주식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우량 국공채 등에 투자 																		
3. 주요투자 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국내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주가하락 (전체 주식 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주식 등에서의 투자를 통한 실세금리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 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하며 기준가격은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am.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 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나이</th> <th rowspan="2">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rowspan="2">주요 운용경력</th> </tr> <tr> <th>운용중인 펀드수</th> <th>운용중인 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배재훈</td> <td>40세</td> <td>팀장</td> <td>17개</td> <td>11,021억</td> <td>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제일투자신탁 리스크관리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td> </tr> </tbody> </table> <p>※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배재훈	40세	팀장	17개	11,021억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제일투자신탁 리스크관리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배재훈	40세	팀장	17개	11,021억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제일투자신탁 리스크관리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p>신규설정펀드로 해당사항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도</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설정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신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비교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비교지수 : KOSPI 100%</p>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	-	-	-	-	비교지수	-	-	-	-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	-	-	-	-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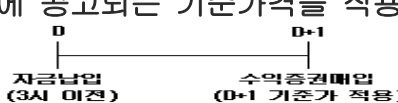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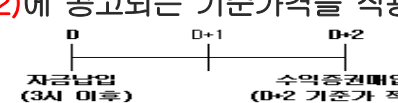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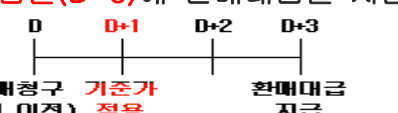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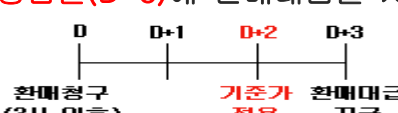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1	종류 C2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온라인 전용	법외의한 간접투자 기구 등	제한 없음	납입금액 20억이상	Wrap 특정금전 신탁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	-	-	-	납입 시	
	환매수수료 ¹⁾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자산운용회사	0.72	0.72	0.72	0.72	0.72	0.72	매3개월
		판매회사	0.68	1.28	0.03	1.68	0.88	0.0	
		수탁회사	0.04	0.04	0.04	0.04	0.04	0.04	
		사무관리회사	0.02	0.02	0.02	0.02	0.02	0.02	
		보수합계	1.46	2.06	0.81	2.46	1.66	0.78	
	기타비용	0.02 수준	0.02 수준	0.02 수준	0.02 수준	0.02 수준	0.02 수준	0.02 수준	발생시
총보수·비용²⁾		1.48	2.08	0.83	2.48	1.68	0.8		

주 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년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다만,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09시00~16:30)에만 가능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1.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 1호
-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 국내투자

*** 종류별 가입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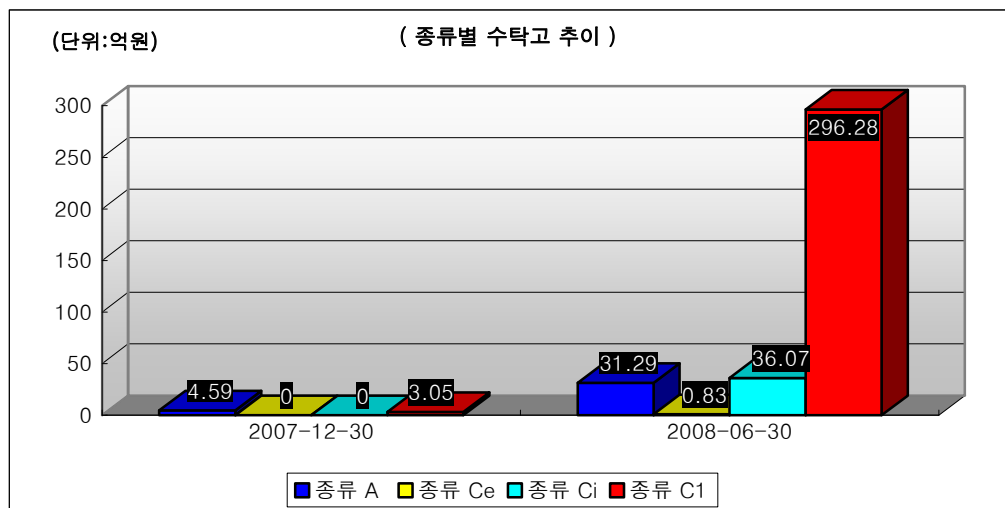
-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전용
- 종류 Ci 수익증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다.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인 법인
-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 납입금액 20억원 이상
-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4. 자산운용회사 하이자산운용(주)

5. 최초 설정일등 연혁 2007년 12월 27일 설정

- 종류 A 수익증권 : 2007년 12월 27일 설정
- 종류 Ce 수익증권 : 2007년 12월 28일 설정
- 종류 Ci 수익증권 : 2008년 4월 3일 설정
- 종류 C1 수익증권 : 2007년 12월 27일 설정
- 종류 C2 수익증권 : 미설정
- 종류 Cw 수익증권 : 미설정
- 2008년 9월 18일 : 상호 변경 (CJ자산운용(주) → 하이자산운용(주))
- 2008년 10월 6일 : 투자신탁명 변경
(CJ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1호 →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1호)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뉴 트렌드 위주의 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추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 고 편입 상품으로 주가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투자신탁입니다.

특히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뉴 트렌드 위주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100%

2. 주요투자전략

트렌드 집중화를 통한 적극적 배분 및 신규 유망 트렌드 포착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40% 이하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의 기본 방침

주식에의 투자는 신성장 동력으로 뉴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해당 트렌드에 매출비중이 확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Pool을 구성하여 그중 주간 단위 상대수익률 상위 트렌드의 비중을 확대해 가며 매주 동일 프로세스 반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종목당 동일 비중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 각 트렌드별 실적개선 상위종목 순으로 Scoring 및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비중 확대를 합니다.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는 신용등급이 우량 채권 및 CP, CD 등에 투자하며,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5%이하로 투자 합니다.

뉴 트렌드

새롭게 그려지는 경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시장중심의 세계경제 재편 ➢ 생산거점 변화 등 물류흐름의 변화 ➢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거대소비 시장의 등장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열기 ➢ 재생에너지 시장의 증가
확실한 변화, 긍정적인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로의 전환 ➢ 골디락스 경기
잠재적 성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FTA, 남북경협 등

1) 자산배분 전략

- 마켓타이밍 전략 최소화 (약관 대비 평균 95% 내외 유지)

- ▶ 적극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지양 (주식편입비 10% 이내에서 조정)
- ▶ 하락장세에 대한 소폭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 (연 2~3 회 예상)

2) 트렌드 배분 전략

- 트렌드 집중화 전략을 통한 적극적 배분전략

- ▶ 주간 단위 상대 수익률 분석을 통한 트렌드별 비중 조절
: 상대 수익률 상위 트렌드의 비중 확대를 통한 집중화 효과 추구
- ▶ 트렌드 비중 확대는 차 순위 종목 추가 편입을 원칙
- ▶ 포트폴리오내 트렌드 최대 한도는 비중의 2배까지

3)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종목당 동일비중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주가변동 상황고려

- ▶ 각 트렌드별 HI EES 모델을 활용한 실적개선 상위종목 순으로 Scoring
- ▶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한 In-depth 분석 후 전략적 비중 확대 가능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2~13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 함으로써 투자 신탁은 이자율, 주식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추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3)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이자율변동위험, 중도환매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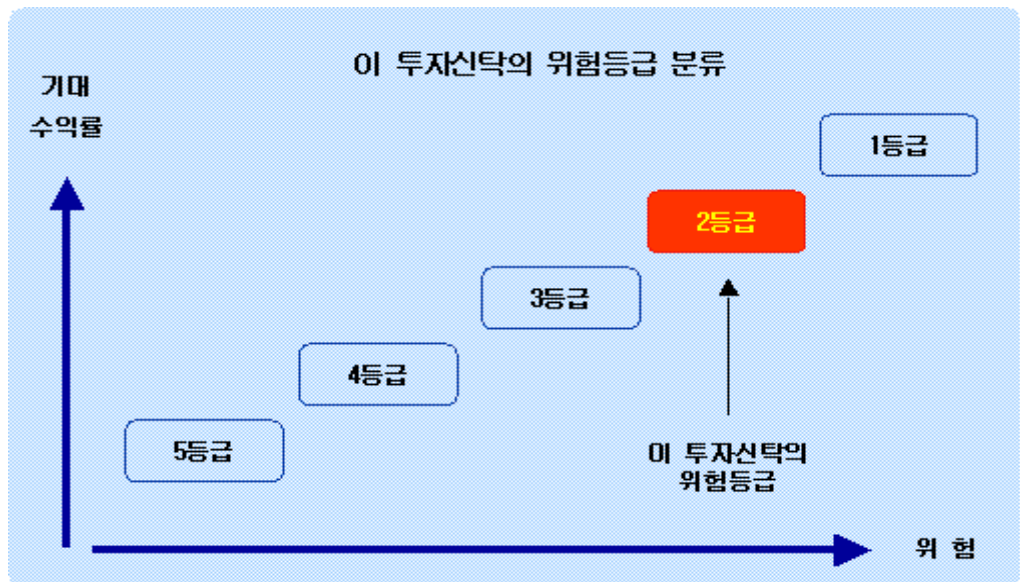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3~14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펀드수익이 주가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되므로 5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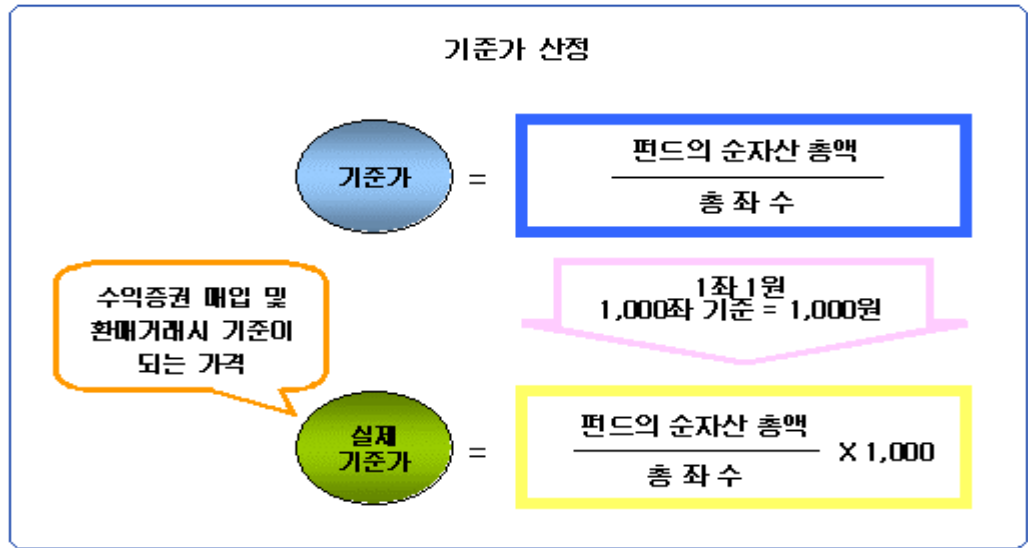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예의 투자를 통한 실세금리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위험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하이 Step Two-Star50 파생상품투자신탁1호
2등급	하이 실적 포커스 주식투자신탁1호
3등급	하이 실적 포커스 혼합투자신탁1호

4등급	하이 굿초이스 채권투자신탁1호
5등급	하이 신종법인MMF투자신탁1호(법인가입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hi-am.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배재훈	40세	팀장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졸업 제일투자신탁 리스크관리팀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

※ 상기 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3 페이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대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1	종류 C2	종류 Cw	
수익자가 직접 부담 하는 수수료	가입기준	제한 없음	온라인 전용	법에 의한 간접투자 기구 등	제한 없음	납입금액 20억 이상	Wrap 및 특정금전 신탁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의 1.0%	-	-	-	-	-	매입 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현물발행비용 등						발생 시

주) 종류 C1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 A 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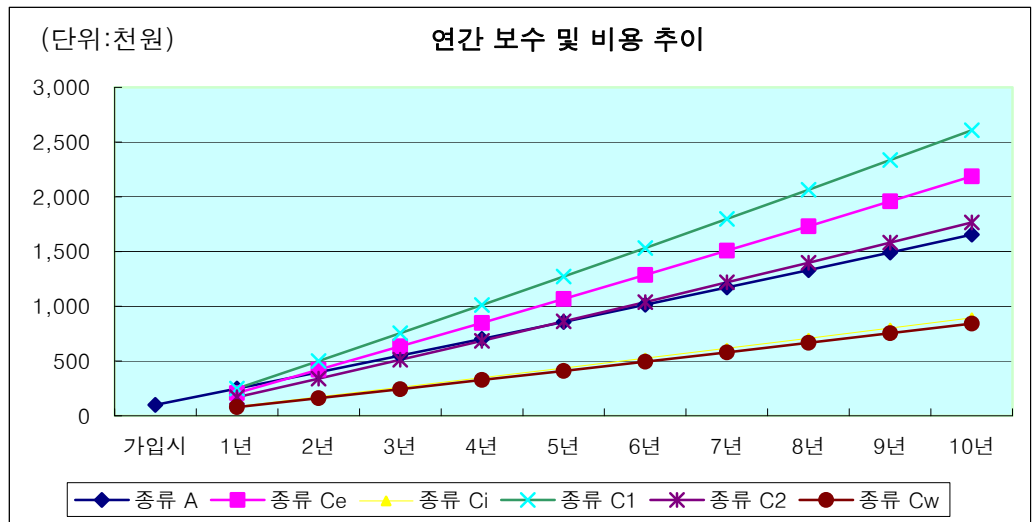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1	종류 C2	종류 Cw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	운용회사	0.72	0.72	0.72	0.72	0.72	0.72	매3개월
	판매회사	0.68	1.28	0.03	1.68	0.88	0.0	
	수탁회사	0.04	0.04	0.04	0.04	0.04	0.04	
	사무관리사	0.02	0.02	0.02	0.02	0.02	0.02	
	보수합계	1.46	2.06	0.81	2.46	1.66	0.78	
	기타비용1)	0.02수준	0.02수준	0.02수준	0.02수준	0.02수준	0.02수준	발생 시
	총보수·비용	1.48	2.08	0.83	2.48	1.68	0.8	

주)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가입 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99,000	248,000	550,000	858,000	1,656,000
종류 Ce	-	210,000	634,000	1,067,000	2,188,000
종류 Ci	-	86,000	259,000	436,000	894,000
종류 C1		250,000	756,000	1,272,000	2,608,000
종류 C2		169,000	512,000	862,000	1,767,000
종류 Cw		81,000	244,000	411,000	842,000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이상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 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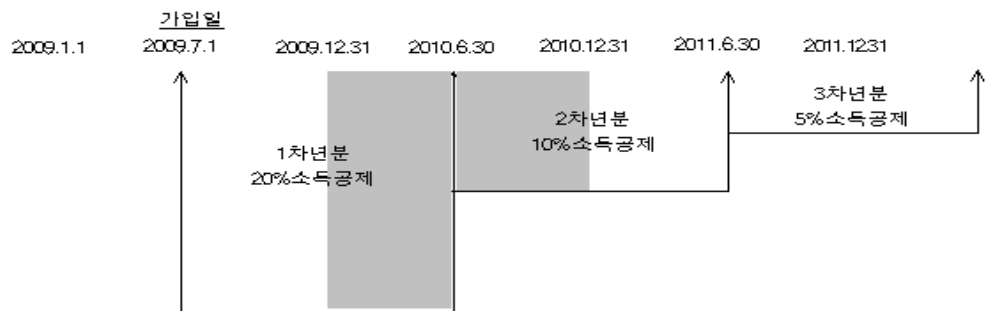
- **적립식 가입시
세제 혜택** -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V.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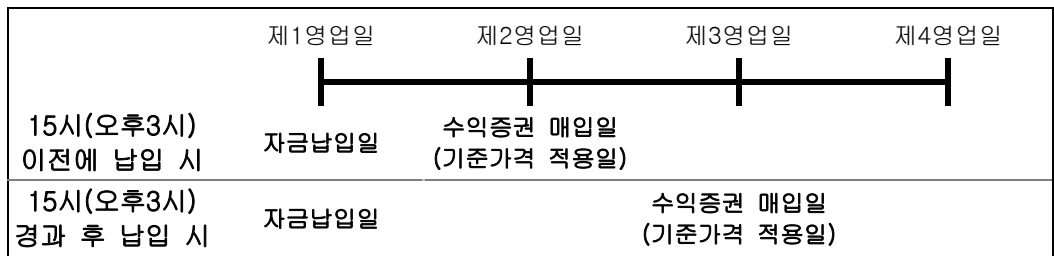
(가)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

(3) 다만, 최초 설정 시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매입기준

-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전용
- 종류 Ci 수익증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바.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인 법인
-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 납입금액 20억원 이상
-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18~19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 신청 시	환매청구일	환매적용기준가격		환매금액 지급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 신청 시	환매청구일	환매적용기준가격		환매금액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19~20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A	종류Ce	종류Ci	종류C1	종류C2	종류Cw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신성장 동력으로 뉴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해당 트렌드에 매출비중이 확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Pool을 구성하여 그중 주간 단위 상대 수익률 상위 트렌드의 비중을 확대해 가며 매주 동일 프로세스 반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종목당 동일 비중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 각 트렌드별 실적개선 상위종목 순으로 Scoring 및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비중 확대를 합니다.

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는 신용등급이 우량 채권 및 CP, CD 등에 투자하며,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5%이하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40%이하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뉴 트렌드	새롭게 그려지는 경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시장중심의 세계경제 재편 ➢ 생산거점 변화 등 물류흐름의 변화 ➢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거대소비 시장의 등장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열기 ➢ 재생에너지 시장의 증가
	확실한 변화, 긍정적인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로의 전환 ➢ 골디락스 경기
	잠재적 성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FTA, 남북경협 등

1) 자산배분 전략

- **마켓타이밍 전략 최소화 (약관 대비 평균 95% 내외 유지)**

- ▶ 적극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지양 (주식편입비 10% 이내에서 조정)
- ▶ 하락장세에 대한 소폭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 (연 2~3 회 예상)

2) 트렌드 배분 전략

- **트렌드 집중화 전략을 통한 적극적 배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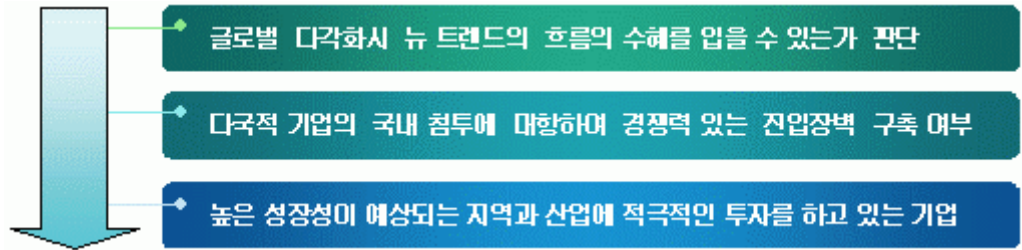
- ▶ 주간 단위 상대 수익률 분석을 통한 트렌드별 비중 조절
: 상대 수익률 상위 트렌드의 비중 확대를 통한 집중화 효과 추구
- ▶ 트렌드 비중 확대는 차 순위 종목 추가 편입을 원칙
- ▶ 포트폴리오내 트렌드 최대 한도는 비중의 2배까지

3)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종목당 동일비중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주가변동 상황고려**

- ▶ 각 트렌드별 HI EES 모델을 활용한 실적개선 상위종목 순으로 Scoring
- ▶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한 In-depth 분석 후 전략적 비중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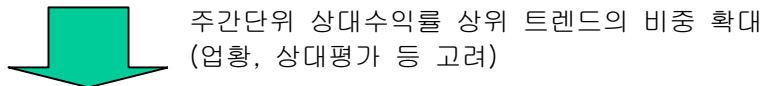
4) 뉴 트렌드 종목 선정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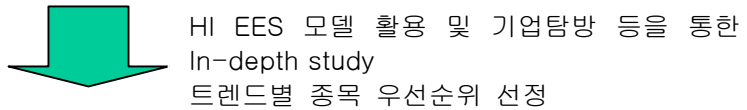
5) 종목 선정 과정

기본투자 Pool
 - 신성장 동력으로 뉴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업
 - 해당 트렌드에 매출비중이 확대되는 기업

투자대상 Pool 선정 (150개 수준)



투자대상 트렌드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구성 50개 내외 종목

매주 동일 Process 반복을 통해 포트폴리오 Re-Balancing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위험 요약	당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60%이상 채권에 40%이하 투자합니다. 만약, 투자 주식, 채권의 대상 기업이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p>주가하락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이자율변동 위험</p>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이중가격 위험</p>	<p>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 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p>	<p>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3. 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
탁 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주식	60%이상 <u>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는 60% 이상</u>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u>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u>
②채권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40%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⑤금리스왑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수익증권	5%이하 단, ETF는 30%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가 발행한 주식
⑦주식및채권 장내파생상품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주식선물 ,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 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액의 15% 이하)
⑧투자증권 대여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⑨환매조건부채권	50%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⑩단기 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
⑪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⑫기타1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및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 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p> <p>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 유통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 보증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 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회사 발행주식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최초설정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가. 주식 위탁매매 배정기간 단위로 기여도표에 의하여 위탁매매기관별 평가 및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p> <p>나. 채권 위탁매매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당사에 대한 기여도, Back-Office 관련 업무협조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위탁매매기관별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p>
장내파생상품 거래	<p>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주식매매 기준과 동일</p> <p>나.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매매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당사에 대한 기여도, Back-Office 관련 업무협조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위탁매매기관별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p>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 **매입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 까지 만 가능합니다.

매입청구의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영업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매입시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 **환매방법**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시간은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이익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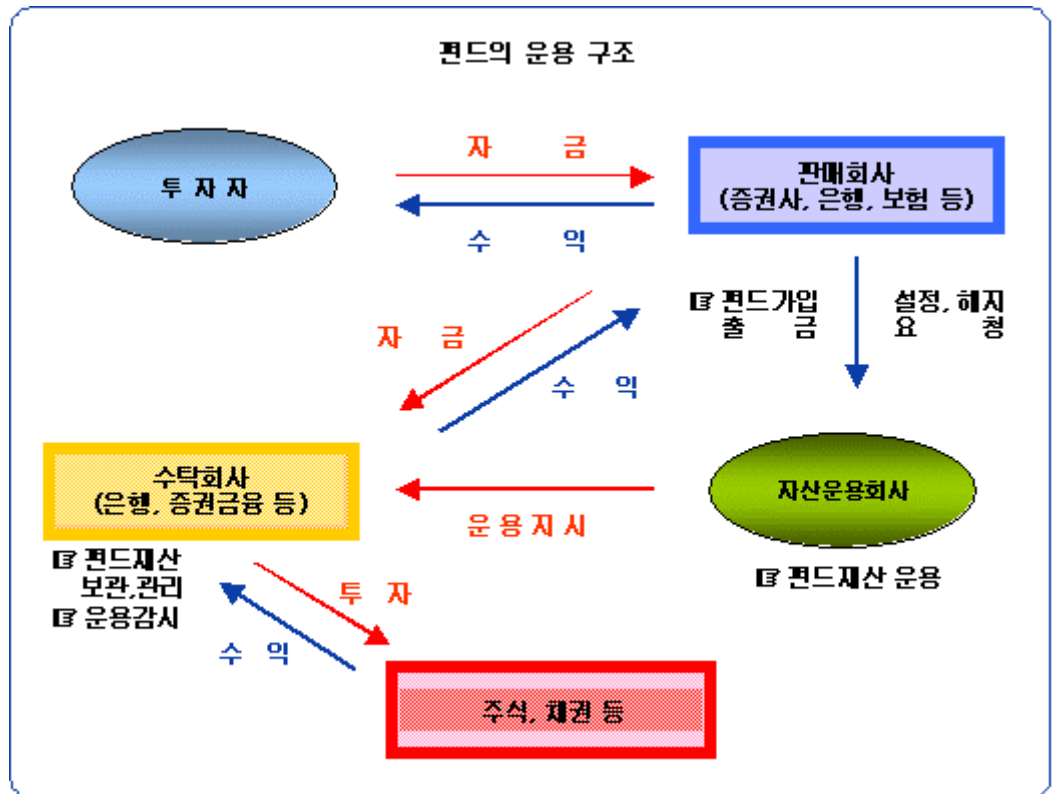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 기간 종료 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 (舊, CJ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하이투자증권빌딩 11, 12층
연 락 처	02- 727-2700
홈페이지	www.hi-am.com
연 혁	1989. 10 제일투자신탁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0. 5 투자자문업 인가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08. 9. 18 하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의 위탁)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는 주식회사 (주)SC제일펀드서비스에 위탁하며,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3. 최근 2 개 사업 연도의 요약재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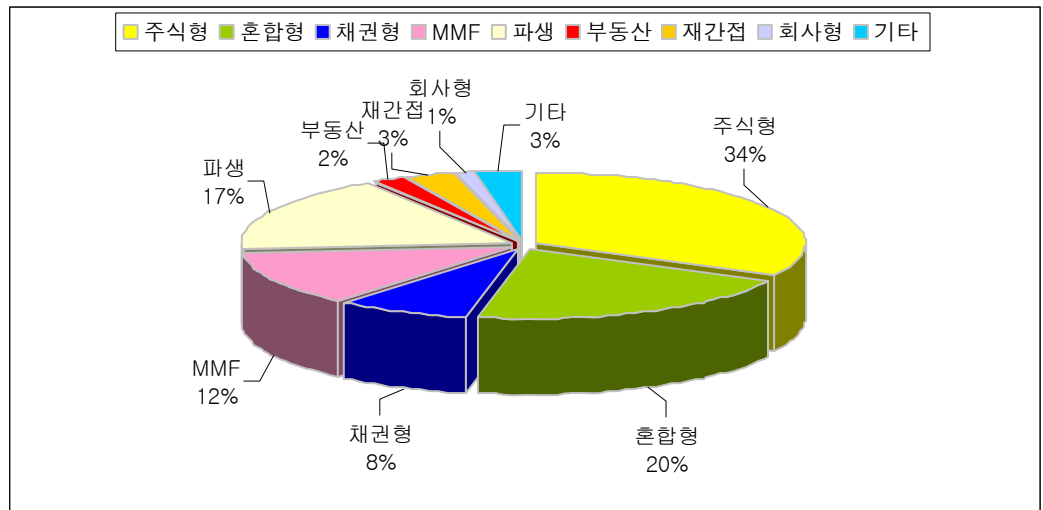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07.03.31	2008.03.31	항목	2006.4.1 - 2007.03.31	2007.4.1 - 2008.03.31
유동자산	47,384	50,224	영업수익	16,850	35,058
고정자산	10,396	8,838	영업비용	9,178	15,282
자산총계	57,780	59,062	영업이익	7,672	19,776
유동부채	15,081	1,592	영업외수익	0	26
고정부채	6,639	7,260	영업외비용	20,681	528
부채총계	21,720	8,852	경상이익	-13,009	19,274
자본금	34,070	34,262	특별손실	-8,635	5,620
자본총계	57,780	59,062	당기순이익	-4,373	13,654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8월 31일 기준, 단위: 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재간접	회사형	기타	총 계
수탁고	31,845	17,805	7,217	22,097	17,028	1,867	3,014	1,084	2,819	104,77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배재훈	40세	팀장	17개	11,021억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졸업 제일투자신탁 리스크관리팀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광주은행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회사연혁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588-3388 www.kjbank.com 1968. 09. 17 창립(광주은행) 2001. 03. 27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 대우증권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회사연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588-3322 www.bestez.com 1970. 09. 23 설립(동양증권) 1983. 10. 20 상호변경(대우증권)
◆ 리딩투자증권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1544-7004 www.leadingkorea.com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회사연혁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1588-1111 www.hanabank.com 1971. 06 창립 (한국투자금융) 1991. 06 은행 전환 1999. 0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5. 12 하나금융그룹 출범
◆ 하이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회사연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번지 1588-7171 www.hi-ib.com 1989. 10. 28 창립 (제일투자신탁) 2004. 8. 31 상호변경(CJ투자증권) 2008. 9. 18 상호변경(하이투자증권)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은행
주 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 120 번지
연 락 처	1577-8000
홈페이지	www.shinhan.com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SC제일펀드서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연 락 처	02) 2014-204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1999년 11월 3일 설립 2008년 3월 24일 상호 변경 (구, 에이브레인) www.scfirstfundservices.co.kr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한국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여의도빌딩
- 설립일 : 2000. 5. 29 - 등록일 : 2000. 7. 1 - 자본금 : 50 억원	- 설립일 : 2000. 6. 20 - 등록일 : 2000. 6. 30 - 자본금 : 30 억원	- 설립일 : 2000. 6. 15 - 등록일 : 2000. 6. 15 - 자본금 : 47.5 억원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 산 운 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hi-am.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주식투자신탁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 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